감사품질이 재량적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경상대)

Ⅰ. 서론

2014년 7월 초 발표한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대형 대부업체의 가교 저축은행 인수 등을 거치면서 2014년 초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본래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던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지역내 우량 고객은 은행 및 보험사로 저신용자·소상공인은 대부업체로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확대가 가시화 된 것이다.[1]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당시 자산규모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 8개, 2013년에 6개 등을 정리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상시구조조정 체계를 취함으로써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잦은 금융사고 및 부실대출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 등으로 잠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 적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확대 방지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 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할 수 있다.

한편 DeAngelo(1981)는 감사품질(audit quality)을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의 오류를 적절하게 발견할 가능성과 이를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 확률의 기대치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수한 질의 감사서비스란 회계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발견된 오류를 공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이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기회주의적 이익관리를 억제하는 역할이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에 의한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정보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과 이로 인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이익관리 억제능력은 감사의 품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품질 감사인과 비교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관한 허위사실이 적발될 때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들의 명성에 더 큰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관리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기업보다 낮은 품질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기업에서 이익관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의 실증연구에서는 감사인

1) 2014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규모, 산업전문성 등이 회계감사 품질의 대용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감사품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실증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인 규모와 명성, 감사인 교체여부 등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에 대해 직·간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회계정보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일관된 실증 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최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연간 65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퇴출 상호저축은행이 문제가 될 경우 이들의 감사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2] 이렇듯 최근 일반 투자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변호사수가 늘면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회계법인은 낮은 회계감사보수와 회계시장 자유수임제로 저가 수주나 덤핑이 횡행하는 등 부실감사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2013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실적 분석[3]에 따르면 감사대상회사의 증가에 비하여 회계감사부분 매출액증가율이 낮고 최근3년간 법정 외부감사1사당 평균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충분한 감사인력과 시간의 투입제약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품질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보다 이익조정 정도가 더 작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감사인 규모(Big4 여부)와 감사인 교체를 이용하였으며, 이들 두 가지가 동시에 즉, BIG4감사인으로 감사인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감사품질의 대리변수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관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감사인 규모(Big4 여부)와 감사인 교체까지 고려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금융기관까지 확장한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연구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과는 다소 다른 구조 및 상이한 법률을 적용 받음으로 인하여 현황 파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저축은행 도입기간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 공시자료와 2001년 이후 전자공시스템에서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민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확장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BIG4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와 감사인교체가 이루어

---

2) 2013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가 “삼일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믿고 코스닥 상장업체 포휴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137명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분식회계 미적발 책임으로 인하여 삼일회계법인은 140억여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0% 추가 적립토록 지시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20시간이 주어졌다.

3) 2014년 9월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에 따르면 (회계감사품질 저하 우려) 회계감사 부문 매출액은 감사대상회사 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248억원(3.4%) 증가하였으나 감사대상회사 수 증가율(개별 5.3%, 연결 9.2%)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K-IFRS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수 증가 등으로 감사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법정 외부감사 1사당 평균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2011년: 33,200,000원, 2012년 33,000,000원, 2013년 32,300,000원)하고 있어 충분한 감사인력·시간 투입제약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 경우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Big4와 감사인 교체가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익조정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교체된 해에만 상호저축은행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ig4 감사인인 경우라도 교체되는 해에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지만 교체된 이후 BIG4감사인이 계속감사를 할 경우에도 재량적대손충당금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계의 국가들보다 소유지분이 덜 분산되어 있고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더 클 수 있어 외부지배구조의 하나의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Fan and Wong 2005)는 것을 지지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이해관계자가 대다수의 서민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감사인 지정 및 주기적인 감사인교체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외부지배구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BIS비율이나 수익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서민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저축은행의 내부지배구조 못지않게 외부지배구조가 이러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판단하에서 계속하여 감사인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받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감독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

2.1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

Francis and Krishnan(1999)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일수록 명성가치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높으며 감사실패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감사기준을 적용하고, 높은 감사품질이 회계정보의 편의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정보환경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발생성향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별성을 연관지었는데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회계발생액의 불투명성을 감소시키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yers et al.(2003)은 높은 감사품질은 경영자의 재무보고과정에서의 극단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낮은 감사품질은 극단적인 회계선택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인 재무보고결정에 따라 회계발생액이 나타나며 이러한 회계발생액은 감사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종길과 최기호(2001)는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발견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재무제표상의 오류 및 불규칙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견된 오류나 불규칙성을 외부에 진실하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정호와 이정우(2008)은 감사품질과 이익의 질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g4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Non-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인 수익성이 기업가치의 평가에 더 높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과 곽수근(2007)은 감사인 교체여부, 교체전과 후의 감사품질, 감사인 교체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감사인의 교체방향과 상관없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이 감사인을 유지한 기업들보다 이익을 상향조정하거나 직전연도에 비해 교체연도에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정영무 등(2009)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감사인 감제교체제도의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계속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더 높았으며 또한 감사인 교체 전보다 교체 후의 재량적 발생액이 더 높았다. 그러나 황인태 · 강선민 · 정도진(2009)에서는 Big6가 감사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발생액은 Non-Big6가 감사한 기업보다 더 크지만 재량적 발생액은 오히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 감사시장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국내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대하여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최정호(2005)에서도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Big5가 감사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문보영 등(2013)은 감사의견을 감사품질로 하여 Big4와 Non-Big4간에 감사품질에 차이가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감사시장에 있어서는 Big4가 Non-Big4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무보고나 재무상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제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종적인 감사의견으로까지 공정하게 제출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감사의견으로 측정한 감사서비스의 품질에 있어서는 양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감사인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의 선임권 등을 이용하여 감사인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최종감사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종일과 남혜정(2013)은 Big4감사인의 선임이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ig4 감사인을 선임한 상장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부채조달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ig4 감사인의 선임은 채권자들에게 주로 보증효과로 인한 결과이며 이는 Big4 감사인이 딥포켓(deep pocket)이라는 것에 기초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KOSDAQ에 속한 상장기업에서 감사품질이 높은 외부감사인의 선임이 보다 주용한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채권자들이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경영자의 이익관리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양한 연구에서 Big4 감사인들이 Non-Big4 감사인들보다 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한다는 이론에 대해 조사해왔지만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회계정보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일관된 실증 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2.2 대손충당금에 대한 선행연구

Ma(1988)는 1980년에서 1984년까지 100개의 미국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한 이익유연화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인 부분과 이익변수와의 관계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 은행들이 재량적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이익유연화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Warfield(1992)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은행대상으로 745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량적항목인 유가증권처분손익이 법인세관리 또는 이익관리에 재량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익관리는 일관된 결과를 찾지 못하고 법인세관리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경영자들이 유가증권처분손익의 인식시기 조절을 통해 법인세를 극소화한다고 주장하였다. Wahlen(1994)은 은행 경영자들이 은행의 미래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될 때, 대출채권손실추정에 대한 자유재량을 통하여 미래예측에 대한 신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Collins et al.(1995)은 은행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처분손익, 대손충당금 설정액, 대손상각비, 대출중도해지 수수료, 보통주, 우선주, 배당금 등 7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조정, 이익조정, 법인세조정현상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Beatty et al.(2005)은 은행이 자기자본규제, 법인세 및 보고이익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거래 또는 발생계정의 시기나 규모 등을 조정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조정, 유가증권매각손익 등을 포함한 기타손익 조정, 퇴직연금관련거래, 신주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조달 등과 같은 다섯가지 실행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자본변수는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신규증권발행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손충당금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기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은행이 이익관리를 한다는 국내 선행연구로 먼저 문현주(2004)는 국내은행의 경영자들이 이익조정전 당해연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조정전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이익유연화를 위하여 재량성이 높은 기말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이(적게)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의 증가가 미래잠재손실에 대한 은행의 감당능력 또는 미래이익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신호(signaling)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현돌과 윤재원(2004)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가능성에 따라 은행의 경영자들이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관리와 자본적정성 비율관리를 하는 지는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이익관리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주로 비우량은행에서 이익관리 및 자본적정성 비율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희(2005)는 상호저축은행이 재량권이 높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관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재량성이 높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자기자본비율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현미와 박홍조(2006)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들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는 주로 대손충당금 조정, 유가증권매각손익, 신주발행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이익관리 및 자기자본관리를 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으행의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만큼 상호저축은행의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자의적인 재량적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3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유가증권, 가지급금 및 미수금 및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위험에 따른 적정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건전성분류에 따른 각각의 대손률 이상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표 1>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분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상	금융거래내,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2개월 미만의 연체여신[4]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0.5%이상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2%이상
고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구체적인 여신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20%이상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75%이상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100%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8조 및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는 금융거래의 내용, 신용상태,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대상 자산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율을 감안하여 분류단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있어서 경영자는 어느 정도의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출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4) 연체여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③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여기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기 곤란한 사유발생으로 즉시 전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여신을 말한다.

정상의 0.5% 이상, 요주의의 2% 이상, 고정의 20% 이상, 회수의문의 50% 이상, 추정손실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확정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대해서만 대출채권과 동일한 최저적립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표2>의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03년 6.8%에서 2013년 11.9%로 증가한 것을 볼 수이다. 이는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요적립액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간신히 요적립액을 초과하던 대손충당금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적립하여야할 대손충당금보다 130%이상 초과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저축은행이 가장 수익성이 호황이었던 시기이자 부실채권인 고정이하 여신의 증가로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되고 난 이후 감소 부실채권의 감소로 충당금적립액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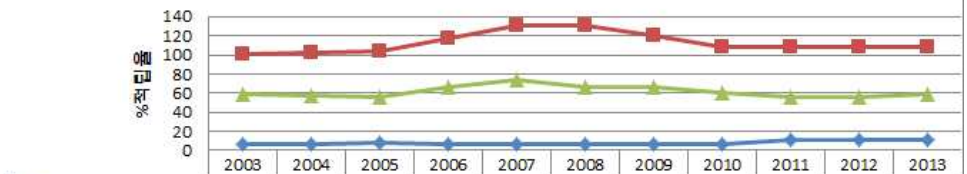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여신대비	6.8	6.92	7.56	6.67	6.28	6.7	6.08	6.65	11.24	11.28	11.48
요적립액대비	101.55	101.68	104.3	117.75	131.42	130.97	119.61	108.36	108.4	107.98	108.22
고정이하여신대비	59.43	56.93	55.2	66.24	73.88	66.73	66.13	60.02	56.33	55.99	58.24

Ⅲ.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재무제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회계감사는 경영자와 외부정보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과 대리인비용을 감

소시키는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는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가 없음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므로, 재무제표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정보불균형을 감소시켜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 따른 역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Fernando et al. 2008).

감사인 규모나 명성이 높을수록 감사능력과 독립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도 높다고 주장한다(DeAngelo 1981). 즉 감사인규모(예로, Big4 감사인)에 따라 감사품질을 측정한 과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감사나 감사실패에 따른 결과로 부담해야 할 감사인의 잠재적 손실규모(예로, 소송위험, 금전적 손실, 이미지나 평판에 따른 손상 정도 등)도 Big4감사인이 더 클 것이라고 자본시장에서는 인지한다고 주장한다(Behn et al. 2008). 그리고 Big4 감사인은 대형 회계법인이라는 점에서 딥 포켓(deep pocket)이므로, 그렇지 않은 감사인과 비교할 때 감사인의 소송 발생도 더 빈번하게 제기된다(Palmrose 1988; Khurana and Raman 2004; Mansi et al. 2004; Fortin and Pittman 2007). 이러한 맥락에서 Big4 감사인은 non-Big4감사인보다 소송이나 부실감사에 따른 미래 손실위험을 회피할 유인이 더 클 수 있어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더 높다(Khurana and Raman 2004; Mansi et al. 2004).

따라서 높은 품질의 감사인이 감사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를 보다 억제시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계의 국가들보다 소유지분이 덜 분산되어 있고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더 클 수 있어 외부지배구조의 하나의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Fan and Wong 2005).

Krishnan(2003)은 Big 6 감사인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훈련, 산업전문성 개발, 정보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peer review제도의 운용, 고객기업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음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작은 고객기업의 상실손실과 명성을 보호하려는 유인이 더 크기 때문에 높은 감사품질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감사인일수록 이익조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경영자의 이익관리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Teoh and Wong 1993; Palmrose 1998; Becker et al. 1998; Francis and Krishnan 1999; Myers et al. 2003; 나종길과 최기호 2001; 나종길과 최관 200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한다.

가설 : 감사품질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더 낮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먼저 감사품질이 높은 저축은행일 경우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하여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식(1)을 이용한다.

$$DALL_{it} = \alpha_0 + \alpha_1 BIG4_{it} + \alpha_2 CHANGE_{it} + \alpha_3 BIG4_{it} * CHANGE_{it} + \alpha_4 BIS_{it} + \alpha_5 NI_{it} + \alpha_6 SIZE_{it} \quad (1)$$

여기서,

DALL	: 재량적대손충당금
BIG4	: 대형회계법인 더미변수. BIG4에 해당하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CHANGE	: 감사인교체
BIS	: BIS자기자본비율
NI	: 대손충당금전입액 설정전이익
SIZE	: 기업규모.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식(1)의 종속변수는 재량적대손충당금(Discretionary Allowance for Loan Losses: DALL)이며 주요 검증변수는 *BIG4*, *CHANGE*, *BIG4*×*CHANGE*이다.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억제할 것이므로 이들의 계수추정치(α_1,α_2,α_3)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DALL(재량적대손충당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통제변수가 사용된다. 대표적인으로 기업규모(*SIZE*), 조정전이익(*NI*), BIS자기자본비율(*BIS*)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만일 자기자본비율(*BIS*)이 전기에 감독강국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기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 감독 및 규제의 대상이 된다. 지현미·박홍조(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들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통제변수로 BIS자기자본비율을 포함하였으며 계수값(α_4)은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문현주(2004)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은행의 이익조정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조정전이익(*NI*)이 높은 경우 이익유연화를 위해 재량성이 높은 기말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이 보고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대손상각비 설정전 이익이 낮을 경우 대손상각비를 적게 설정함으로써 이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대손상각비 설정전 이익이 높을 경우 대손상각비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대손상각비설정전 이익을 조정전이익으로 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NI*의 계수값(α_5)이 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규모변수(*SIZE*)는 정치적비용을 대리하는 변수로 포함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에도 포함시켰다. 은행의 규모변수는 일반적으로 자산, 대출채권 등과 같이 은행의 외형을 결정짓는 변수를 사용한다. 은행의 경우 자산의 상당부분을 대출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채권의 증가는 은행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 비용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좋다면 재량적 항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규모의 계수값(α_6)은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제변수들의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

여 모두 기초총자산으로 나눈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D)도 추가하였다.

3.3. 변수의 정의

3.3.1 재량적 대손충당금

일반기업의 이익관리현상을 검증하는 경우 대부분 총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일반기업과 달리 경영형태 및 재무제표형식이 다르므로 일반기업에서 이용되는 총발생액접근법으로 금융기관의 이익관리를 검증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업종의 이익관리 현상을 검증하는데 주로 적용하는 개별발생액접근법(specific accruals approach)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회사 등의 이익관리 현상을 이러한 개별항목을 가지고 이익관리를 검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이용하거나 회귀분석결과에서 얻은 잔차를 재량발생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먼저 1단계로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설명하는 변수만을 포함한 회귀식을 추정하여 그 잔차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설검증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한다(Beaver and Engel 1996; McNichols and Wilson 1988; 최효순 2003). 그러나 현재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문현주 2004; 최현돌과 윤재원 2005; 지현미와 박홍조 2008)은 주로 하나의 회귀식에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을 통제하는 변수와 가설검증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1단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하나의 식에 모두 포함됨으로써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Beaver and Engel(1996)을 이용하여 2단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식(1)은 대손충당금은 재량적대손충당금과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의 합이다. t년도 말 i주식에 대한 비재량적대손충당금의 추정은 NALL 순상각(CO), 대출채권(LOAN), 무수익자산(NPA) 그리고 차기 무수익자산의 변화분(ΔNPA_{it+1})에 대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여 그 잔차를 재량적대손충당금으로 간주한다.

$$ALL_{it} = NALL_{it} + DALL_{it} \quad (1)$$

$$NALL_{it} = \gamma_0 + \gamma_1 CO_{it} + \gamma_2 LOAN_{it} + \gamma_3 NPA_{it} + \gamma_4 \triangle NPA_{it+1} + \mu_{it} \quad (2)$$

$$ALL_{it} = \gamma_0 + \gamma_1 CO_{it} + \gamma_2 LOAN_{it} + \gamma_3 NPA_{it} + \gamma_4 \triangle NPA_{it+1} + Z_{it} \quad (3)$$

여기서 $Z_{it} = DALL_{it} + \mu_{it}$

3.3.2 감사품질

3.3.2.1 BIG4 (감사인의 규모와 명성)

DeAngelo(1981)는 따르면 많은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인의 경우, 총수익에서 개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어느 한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그 기업을 계속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감사품질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잠재적인 고객을 잃어버림으로써 상실하는 수익이 더 크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개별 감사고객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즉,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기타 회계법인에 비해 부실감사에 따른 기존 명성의 손상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기준을 타협할 유인 등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요인이 적을 것이므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대상회사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기술적 능력이 동일하더라도 규모가 큰 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보다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 이에 따라 감사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감사인의 규모를 사용하였다. 즉, 규모가 큰 감사인일수록 높은 감사품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DeAngelo(1981)의 연구 이후 감사인의 규모 등이 회계감사품질의 대용변수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용변수가 실제 회계감사품질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현재의 국내 실정에 맞게 BIG4를 이용하였다.[6] BIG4의 감사를 받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3.3.2.2 감사인 교체여부(CHANGE)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감사인 교체 여부는 감사기간이 길수록 감사인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높은 감사품질로 이어진다는 감사인 전문가가설(auditor expertise hypothesis, Ryan et al., 2001; Farmer et al., 1987; 박종일과 곽수근, 2007)과 감사기간이 늘어날수록 감사인의 태만과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가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감사품질이 하락하게 된다는 감사인 방호가설(auditor entrenchment hypothesis, Johnson et al., 2002; Solomon et al., 1999; 임영덕, 2006)로 나누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7] 따라서 해당연도에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CHG 변수를 측정한다.

---

5) Big 6는 또한 직업훈련과 산업전문성의 개발을 위해 더욱 헌신한다(Crasswell et al., 1996; DeFond et al., 1997).

6) 해당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다음의 감사인을 Big4로 분류하였다.
2000년 : 삼일, 안건, 안진, 삼동, 영화
2001~2002년 : 삼일, 안건, 안진, 삼정
2003년 : 삼일, 삼정, 안건, 영화, 하나, 하나안진, 한영
2004년 : 삼일, 삼정, 안건, 하나안진, 한영
2005년 : 삼일, 하나안진, 한영, 삼정
2006~2012년 : 삼일, 안진, 삼정, 한영

7)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인 교체제도란 감사인이 오랜 감사를 수행하면 기업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 수 있어, 피감사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서 시행한 조치로 2006년부터 같은 기업에 대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서 감사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IFRS 도입으로 2011년 개별기업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폐지하고 연결그룹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표명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이는 2002년에 시작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2003년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4년부터 연구기간에 포함하였다. 기타 필요한 재무자료는 KIS-Value에서 수집하였으며 표본기업은 금융업과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2012년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표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① 감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② 기타 재무자료가 입수가능한 상호저축은행

<표 3> 표본선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최초표본	107	106	107	108	107	106	106	105	98	950
(차감)										
감사보고서 미공시기업	5	2	2	3	3	4	4	11	16	50
기타재무변수 미입수기업	3	2	5	3	3	2	1	7	5	31
최종 표본	99	102	100	102	101	100	101	87	77	869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찾을 수 없거나 분석에 필요한 기타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들은 제외하였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기업-연도는 869개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4>는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기업의 재량적대손충당금,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공시 여부 및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시한다. 각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특성변수의 측정치를 각각 1%와 99% 수준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평균(중위수)은 -0.0002이고 중위수는 -0.0006이다. 주요 검증변수인 감사인교체(*CHANGE*)와 BIG4의 평균은 각각 0.3026과 0.4644로 표본기업의 30.26%가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며 전체표본기업의 46.44%가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다. 이것은 일반기업의 60%이상이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받는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BIS*)의 평균은 9.9775(중위수: 9.5850), 대손충당금전입액설정전 세전순이익(*NI*)의 평균은 0.0325(중위수: 0.0266)이며, SIZE의 평균은 26.4836(중위수: 26.3889)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변수들은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4> 기술통계량

	Mean	Min	Median	Max	Std.Dev.
DALL	-0.0002	-0.1200	-0.0006	0.1100	0.0210
CHANGE	0.3026	0.0000	0.0000	1.0000	0.4597
BIG4	0.4644	0.0000	0.0420	0.5300	0.4990
BIS	9.9775	-19.470	9.5850	44.9600	0.1297
NI	0.0325	-0.1000	0.0266	1.5500	0.0603
SIZE	26.4836	23.8500	26.3889	29.3700	0.9721

(주) 변수 정의

DALL	: 재량적대손충당금
CHANGE	: 감사인교체 더비변수.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BIG4	: 대형회계법인더미변수. BIG4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BIS	: BIS자기자본비율
NI	: 대손충당금전입액 설정전 세전순이익
SIZE	: 기업규모.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2. 상관관계 분석

<표 5>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재량적대손충당금(DALL)과 감사품질(BIG4)의 상관계수와 감사인교체(CHANGE)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003과 -0.0027로 나타났지만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통제변수 중 대손충당금전입전 세전이익(NI)와 기업규모(*SIZE*)는 재량적대손충당금(*DALL*)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5> 변수간의 상관관계

	DALL	BIG4	CHANGE	OP	BIS	NI
BIG4	−0.003	1.000				
CHANGE	−0.027	0.024 ***	1.000			
BIS	0.028	−0.043	−0.079 **	0.324 ***	1.000	
NI	0.079 **	−0.025	0.025	0.115 ***	0.155 ***	1.000
SIZE	0.068 **	0.152 ***	−0.022	0.010	−0.219 ***	0.082 **

주 1) 위에 표시된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를 나타냄.
*,**,*** 는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주 2)변수 정의는 <표4>를 참조

4. 회귀분석 결과

<표 6>는 본 연구의 가설인 감사품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량적대손충당금이 증가한다는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시한다.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칼럼의 BIG4의 계수값은 -0.005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 칼럼에서 감사품질을 CHANGE로 측정한 경우의 계수값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칼럼인 BIG4와 감사인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BIG4 \times CHANGE$)에는 -0.121로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감사인 규모나 명성이 높을수록 감사능력과 독립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회계감사는 경영자와 외부정보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과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체로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감사나 감사실패에 따른 결과로 부담해야 할 감사인의 소송위험, 금전적 손실, 이미지나 평판에 따른 손상 정도 등도 Big4감사인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부실감사에 따른 미래 손실위험을 회피할 유인이 더 클 수 있어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더 높다(Khurana and Raman 2004; Mansi et al. 2004)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5>회귀분석 결과

$$DALL_{it} = \alpha_0 + \alpha_1 BIG4_{it} + \alpha_2 CHANGE_{it} + \alpha_3 BIG4_{it} * CHANGE_{it} + \alpha_4 BIS_{it} + \alpha_5 NI_{it} + \alpha_6 SIZE_{it}$$

		BIG4	CHANGE	BIG*CHANGE
Variable	Sign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ntercept		−0.039 (−2.06)**	−0.025 (−1.99)**	−0.038 (−1.97)**
BIG4	(−)	−.005 (−1.02)		0.048 (1.18)

CHANGE	(−)		−0.025 (−0.72)	0.050 (1.07)
BIG× CHANGE	(−)			−0.121 (−2.32)**
BIS	(+)	0.032 (0.91)	0.030 (0.85)	0.027 (0.78)
NI	(+)	0.068 (1.96)**	0.069 (2.01)**	0.067 (1.95)*
SIZE	(+)	0.070 (1.98)**	0.068 (1.95)*	0.070 (2.01)**
F−value		2.39**	2.52**	3.41***
Adj		0.105	0.107	0.133
obs.		869	869	869

주 1)변수 정의는 <표4>를 참조

또한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Big4와 감사인 교체가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상호저축은행의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단순히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해서 상호저축은행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교체된 해에만 이익조정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ig4 감사인인 경우라도 교체되는 해에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지만 교체된 이후 BIG4감사인이 계속감사를 할 경우에도 재량적 대손충당금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체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계의 국가들보다 소유지분이 덜 분산되어 있고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더 클 수 있어 외부지배구조의 하나의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Fan and Wong 2005)는 것을 지지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이해관계자가 대다수의 서민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감사인 지정 및 주기적인 감사인교체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외부지배구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한편 대손충당금전입전 세전이익(NI)의 계수값(α_5)은 0.068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났다. 대손상각비 설정전 이익이 낮을 경우 대손상각비를 적게 설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대손상각비 설정전 이익이 높을 경우 대손상각비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문현주(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의 계수값(α_6) 0.070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은행의 경우 자산의 상당부분을 대출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채권의 증가는 은행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 비용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좋다면 재량적 항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나종길, 최기호.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26(3). 2001: 51-89.
문보영·김대건·유용근·차승민(2013), Big4와 Non-Big4 감사인간 감사의견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회계정보연구, 31(1), 317-338.
문현주(2004). 개별발생액접근법을 통한 은행의 이익관리 연구, 회계학연구, 29(2), 111-131.
박종일남혜정(2013), Big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효과: 유가증권상장과 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실증적 증거,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5(2), 323-368.
박종일, 곽수근.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회계와 감사연구 46. 2007: 191-226.
박연희(2005).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관리”, 세무와회계저널, 6(2), 67-85.
정영무, 이기세, 전성일.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 1-17.
지현미·박홍조(2006).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회계저널, 15, 23-44.
최정호. “회계제도 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0(2) 2005: 107-149.
최정호·이정우(2008). 감사품질과 이익의 질 및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48, 109-144.
최현돌·윤재원(2004), 은행대손충당금과 이익관리 및 자본적정성 비율관리에 관한 연구: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회계와감사연구, 40, 131-158.
황인태·강선민·정도진(2009), BIG4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38(1), 1-34.
Beaver W. H., Ellen E. Engel(1996). Discretionary behavior with respect to allowances for loan losses and the behavior of security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 177-206.
Beatty, A., S. L. Chamberlain, and J. Magliolo(1995).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s: the influence of taxes, regulatory capital, and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Autumn), 231-261.
Collins, J., D. Shackelfor and J. Wahlen(1995).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Autumn), 263-291.
DeAngelo L.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 1981: 183-199.
Francis J. and Krishnan.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1999: 135-165.
Krishnan G. V. "Auditor quality and thr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1)* 2003: 109-126.
Ma. C.(1988). Loan loss reserves and income smoothing, the experience in the U.S.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15(4). 487-497.

Myers J., L. A. Myers. and T. C. Omer.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3) 2003: 779-800.

Palmrose Z.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1988: 55－73.

Warfield, T. and T. Linsmeier(1992). Tax plann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e differential earnings component, The Accounting Review, 67, 546-562.

Wahlen, J.(1994). The nature of information in commercial bank loan loss disclosures, The Accounting Review, 69, 455-478.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시행세칙